

노익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www.noinboho.or.kr](http://www.noinboho.or.kr)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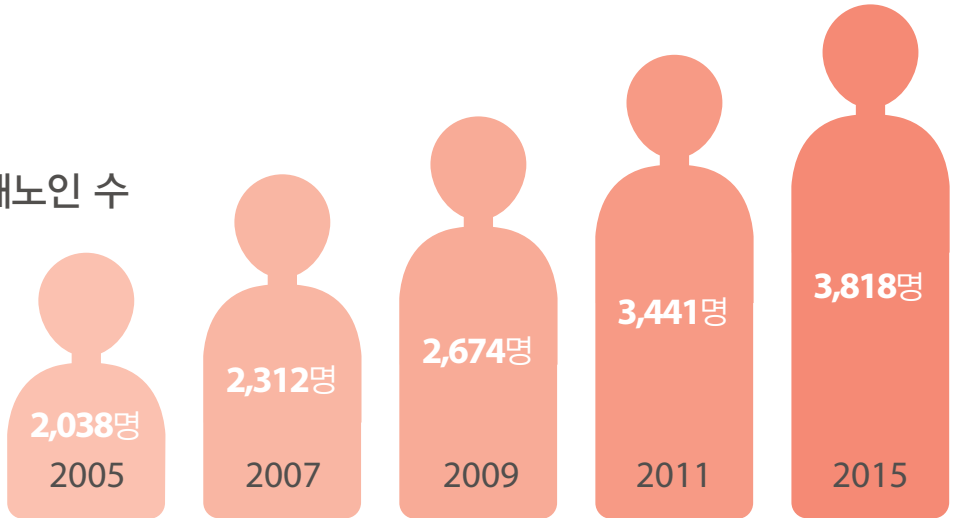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현황

##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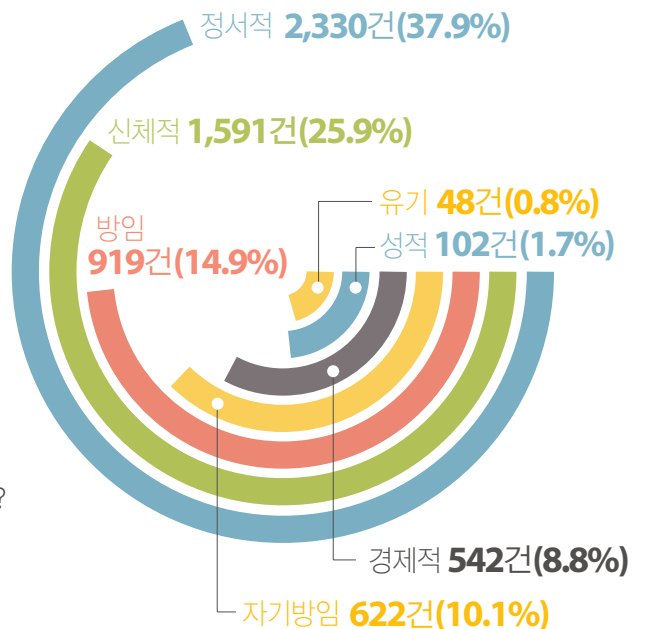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학대유형별  
비율 (2015년 기준)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 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나는 신고의무인

###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노숙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위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61조의2제1항).

###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보호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위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감수성”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BO

## 노인학대 알아보기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③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⑤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 왔음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함
- ④ 은폐성 : 신고를 꺼리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기료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 두었다. 이 시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식사 시간 외에는 2층의 거주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시설 외부에 울타리를 두르고 문을 잠가서 시설 이용자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치매노인의 경우, 시설 밖으로 나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일론 줄로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 놓았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2년간 생활해 온 B는 고령으로 인해 배변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C로부터 “자기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왔다. 이를 확인한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는 학대행위자인 C를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연계 하였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는 가족상담 중에 B할머니의 큰아들이 사업자금 7,000만원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할머니의 뒷머리를 손잡이가 있는 냄비로 내리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자신은 괜찮다고 일관하고 있다.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할머니의 근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C는 시설에서 아무런 프로그램 진행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게 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며 전원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다. C는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시설 종사자는 점점 C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 노숙인 시설에서 5년간 생활해 온 Q할아버지는 체력이 약하여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J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은연 중에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이를 참지 못한 Q할아버지는 자진 퇴소하여 인근에서의 노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 남편과 재혼 후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본처 자식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은 경험이 없고 늘 무시당하고, 비난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한 Z할머니는 이제껏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다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상담 중에 털어놓으셨다. 얼마 전에도 자식들이 찾아와 재산문제로 협박을 하고 갔지만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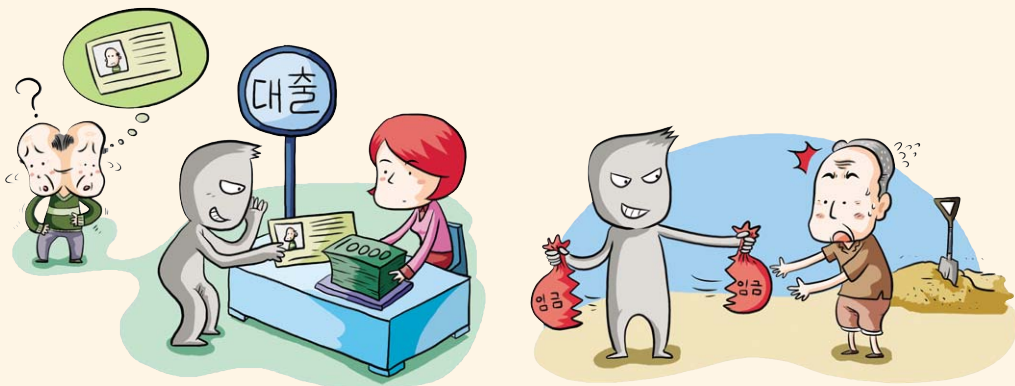
- 동네 이웃주민인 K는 근처에 장애인 모녀(당시 66세, 42세)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의도적으로 모녀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모녀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불쑥 집으로 찾아와 모녀를 수차례 성추행하였다.
- 노숙인 시설의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목욕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할아버지가 “여성이 아닌 남성봉사자가 목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둘 다 늙었는데, 무슨 상관이나”며 강제로 옷을 벗겨 목욕을 시켰다. 할아버지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이후 목욕봉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F할머니 댁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으나 안면이 있는 이웃 할아버지가 찾아 와서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아내는 여자노릇을 못 한다”며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이후 경로당 회장한테 이 사실을 말했지만 할아버지를 두둔하기만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할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방광염이 생겨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경찰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의뢰하였다.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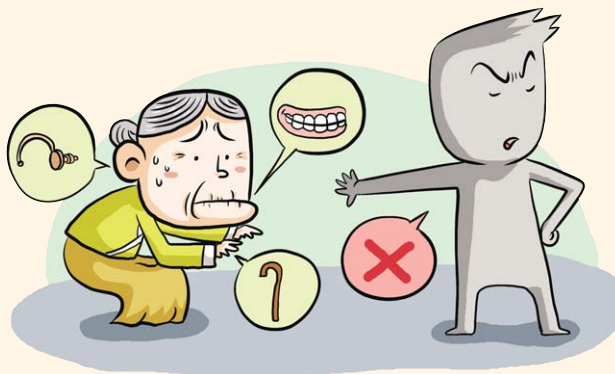
-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H노인에게 고된 발일을 시키며 용돈 명목으로 담뱃값 정도를 지불해 왔다. 또한 시설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H노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직접 데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제2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 5,000만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시설종사자의 제보로 국가위원회 직권조사가 의뢰된 상황이다.
- 노숙인 시설에 8년간 거주하고 있는 P할아버지는 같은 시설에서 호형호제하며 생활하는 Y의 부탁으로 모아둔 400만원을 차용해주었다. 그러나 Y가 원금을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돈을 돌려주길 요구했는데, Y는 오히려 “노인이 노망이 났다”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다른 입소자들에게 읊소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P할아버지는 억울함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알아챈 Y는 그날 밤에 도주하였다.
- G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채 홀로 살고 있었으나, 큰딸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딸과 손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할머니는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딸과 손자가 부양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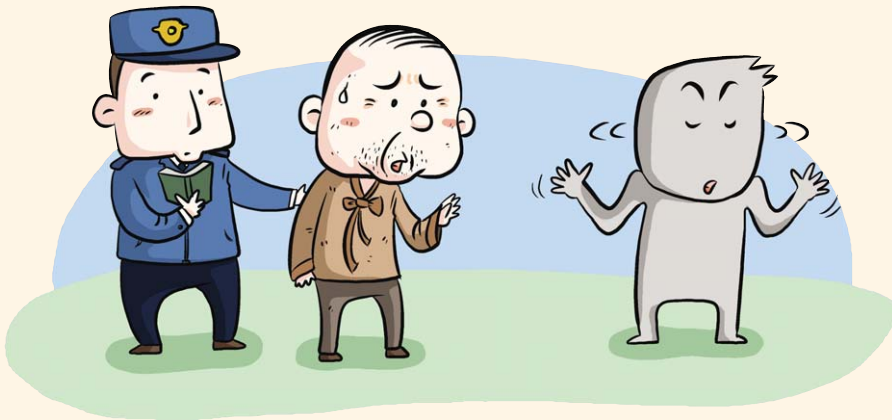
-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M장애노인은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다. 하지만 시설 내 종사자 수가 너무 부족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도 뜸해 진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가 있는 M은 도움 없이 음식섭취도 어려워 식사를 항상 부실하게 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원 봉사자가 올 때에나 목욕을 할 수 있었고, 벽과 침구류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데다가 시설 주방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있었다.
- 미신고 노숙인 시설의 K원장은 거리에서 상담을 통해 J할머니를 입소시켜 시설의 주소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장이 J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면서도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적 질환이 있는 J할머니에게 의료지원을 하지 않고,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J할머니의 질환은 더욱 악화되었고, 입소 2년 후 시설에서 사망하였다.
- P할아버지는 1인 가구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욕구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과거의 할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 동거하기를 꺼렸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과 파지를 주워 얻은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였다.



## 우리 주변에서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 유기

- 지방에 살고 있는 V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매우 심한 음주로 가족들에게 구타 및 욕설 등의 위해를 가하였으며, 도박에 빠져 가족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과거부터 지속된 할아버지의 폭력성향으로 크게 상처받은 가족들은 고령으로 인하여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V할아버지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지역의 노숙인 시설 앞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V할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한 시설과 경찰은 가족들과 연락하여 보호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





##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호호호

##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sup>1)</sup>

### [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장애인·노숙인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학대행위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인과 관련하여 노인가족, 동료 노인, 자원봉사자,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노숙인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관서(112) 등으로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Tip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주로 방임과 감금 사례가 많습니다. 거동이 어렵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묶거나 문을 잠그는 등으로 이동을 못하게 하고, 위생관리 혹은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여 장애노인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학대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민감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개입하는 시설 종사자가 해당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문제시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방법으로 시설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인의 퇴소는 깊이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그들이 주거 등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퇴소될 경우, 다시 거리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신속한 신고를 전제로 그들이 다시 거리생활로 접어들지 않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설 내에서의 생활분리, 필요에 따른 전원조치 등의 방법 등 사례에 적절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를 만나게 되며 노인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노인 학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두려워 하여 학대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로서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 기관소개

## ‘어떻게 도와줄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 사례 적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A건강가정사는 가족봉사단 중 한 분이 "B어르신은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달받아 B어르신과 상담 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 사례접수**를 통해 학대행위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응급학대의심사례로 접수 판정**함
- 신고접수 당일, **현장조사 및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상황과 학대행위자 및 자녀관련 **정보를 파악**함
- 응급사례로 판정**되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 보호** 후,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개선으로 목표 설정함
-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가정법률상담사와 연계하여 이혼 절차 법률정보제공, 전문상담사와 심층상담, 심리치료, 부부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함
- 학대행위자의 태도변화로 재학대 위험감소 및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변화, 건강개선 등의 확인을 통해 **사례평가 후 종결**함
- 종결 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 '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에 참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대행위자의 개선된 모습 등을 통해 **재학대여부 확인**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 실시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최대 4개월 입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52개소)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1577-1389** (**1**년**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또는 **110**



## Silver Smile이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서울시 마포대로 182-10(공덕동105-155) 성춘빌딩 2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http://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6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